

21세기에 대비한 통신시장 고도화 방안

최용제 외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제1장 통신시장의 대외 환경변화

1) WTO 관련 최근 동향

WTO 기본통신협상의 핵심은 Reference Paper라는 규제원칙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협상 참가국들이 자국 규제제도의 질적인 자유화를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시장개방 양허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다수국들의 반대로 끝을 이루지 못하였다.

97년 중반 미국은 협상참여국들의 지지와 동의하에 WTO 서비스이사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통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구의 주목적은 규제원칙 양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라고 밝히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 기본통신서비스 및 각국 규제약속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기구화를 의도한다고 할 것이다.

국제서비스와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국제서비스에 대한 양허수준 개선 및 기존 국제정산체계의 개혁이라고 보는 미국은 국제정산료 Benchmark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기본통신협상에서 국제서비스에 대한 추가 논의는 중단되었다.

미국은 지난 8월 정식으로 Benchmark 제안을 규칙으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EU는 특별

한 반대의사가 없는 듯하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정산료가 낮아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지만, 요금 인하의 속도가 너무나 급격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ITU와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정산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크게 차신요금체계, 접속요금체계, Teruem 체제의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이었던 위성서비스문제는 환경변화에 따라 국제위성통신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Intelsat의 구조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Intelsat의 자회사 설립이 쟁점이 되었다.

편집자 주)

본고는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조사보고서 「21세기에 대비한 통신시장 고도화 방안」의 요약분임을 밝힙니다.

협상참가국들은 Intelsat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급속한 구조개편이 초래할 Intelsat의 해체 가능성과 이로 인해 가속화될 미국 주도의 위성통신 시장체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점진적인 구조개편을 주장하는 유럽 및 개도국의 입장과 급진적인 민영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와중에서 Intelsat의 구조개편에 관한 결정을 '98년 이후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2) OECD 관계 동향

전세계통신시장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 서비스, 장비 측면에서의 융합으로 기업융합과 산업체구성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해오고 있는데 자국의 기술변화와 시장 기능을 고려한 속에 채택된 각국의 자유화 모델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유화 과정에서 규제기관은 국내적으로는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기술·산업 동향에 맞는 융통성 있는 규제틀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각국의 경제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 통신시장의 개방과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국제통신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계 단일경제권화 추세와 더불어 세계를 무대로하는

는 기업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국내 정책·제도간의 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각국은 국내 경쟁법을 확립하거나 또는 기존 경쟁법을 적절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일국 관할권을 넘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

경쟁법에 관하여서는 GATT, UNCTAD, OECD 등에서 다자간 협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NAFTA, EU, APEC 등의 지역단체 내에서의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양국간의 협정을 통한 문제 해결접근방식이며 미국은 이에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경쟁법의 국제 규범화에 있어 가능한 접근방식은 국제통일규범방식, 조화방식, 최소규범화 방식, Building-Block방식, 자력구제 방식 등이 있다.

3) WRC 관계 동향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분야 (ITU-R)의 국제회의로 매 2년마다 개최되며,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을 개정하며, 전파통신과 관련한 국제적인 현안을 협의·결정하는 국제 전파 통신 관련 최고의 결기구이다. 회의의

결정내용은 국제법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전파통신·방송서비스, 기술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전파통신정책 수립 및 신규 사업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회의이다.

WRC-97 회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WRC-97에서는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분배, 방송위성계획의 개정, 해상통신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향후 위성궤도/스펙트럼 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 전파통신·방송과 관련한 국제적 주요 현안사항을 검토·결정하였다. 전파규칙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WRC-95에서 이루어진 전파규칙의 단순화 작업에서 일관성 확보가 되지 못한 조항들에 대해 문구상의 수정(editorial change) 작업을 완료시켰다.

이동위성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Iridium, Globalstar, ICO와 같은 비정지 궤도이동위성시스템의 서비스가 98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며 비정지궤도고정위성을 바탕으로 한 광대역 위성통신시스템인 미국 Microsoft사의 Teledesic이나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과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프랑스 Alcatel사의 Skybridge 등이 희망 주파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위성시스템을 통해 고속의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기 회의의제에 IMT-

2000서비스가 포함됨으로써 IMT-2000서비스의 표준화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ITU내 연구반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제2장 WTO 협상결과에 따른 규제정책방향

1) WTO 기본통신협상의 주요결과 및 국내통신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기본통신협상은 대부분의 서비스 무역이 통신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특히 UR 협상과정에서 이미 양허된 부가통신서비스 시장발전에 있어서 기본통신시장의 개방과 자유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또 기본통신협상은 세계 경제 전반에서 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및 전략적인 중요성이 점증하는 현실 속에서 급격히 변화해 가는 세계 통신시장에서의 질서를 다자간 국제규범 하에서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개방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7년 2월 15일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총 69개 국가가 시장자유화를 양허하였으며 이들 국가가 세계 통신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신서비스 수입 면에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셀룰라시장의 94%를 점하는 막대한 것이다. 각국의 양허현황을 서비스 별로

보면 데이터 전송의 경우 63개국이 양허하였으며 시내, 시외, 국제전화는 61개국, 셀룰라 전화는 61개국이 양허하였다. PCS, 이동데이터전송, 무선휴대폰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이동통신서비스는 57개국이 양허하였으며 전용회선서비스는 53개국이 양허하고 있다. 서비스의 위성서비스는 55개국이 양허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만큼 양허수준도 차이가 크다.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은 20~40%정도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동남아국가들이 현행대로 독점 또는 복점체제를 고수할 예정이다.

한국,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양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전세계 통신시장의 향후 전망은 우선 경쟁확대에 따라 통신산업의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이 기대되는데 ITU는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로 전세계 시장의 규모가 2000년에는 현재의 두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이전까지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통신시장의 17%만이 경쟁이 도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잠재력을 매우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통신하부구조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 급

속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신시장의 자유화와 경쟁도입은 이용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막대한 통신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본통신협상의 타결과 초국가적 사업자(carrier's carrier)들을 탄생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자국정부의 관할권으로부터 벗어날 것이 예상되며셋째,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 틈새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합법화가 이루어져 상당기간 성장이 예상되는 동시에 통신시장전반에 걸친 자유화, 경쟁도입으로 기존의 통신서비스의 가격인하 등이 이루어져 재정거래기회가 축소되어 오히려 위축되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넷째,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로 각국이 다자간 합의된 규제원칙들을 철저히 이행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서비스간 경쟁이 벌어지게 되므로 각국의 PTO는 상당한 시장을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다국적)기업 내부의 통신망 구축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개방이 시작되는 1998년 초부터 기업내 통신망의 구축은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성전화서비스(시내/시외/국제)를 포함하여 12개 서비스에 대해 양허하였으

며 설비보유산업의 경우, 무선과 유선 분야 모두 1998년부터는 동일인의 보유지분이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 33%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며 2001년부터는 유·무선 모두 49%까지 지분참여가 확대, 허용된다. 음성재판매사업은 1998년부터 국내사업자에게 먼저 허용된 후 1999년부터는 1단계로 외국인이 49%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2001년부터는 외국인 100%투자가 허용된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WTO 기본통신 협상과 병행하여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의 원칙아래 지속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자유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지만 1998년 이후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매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에 따라 가장 먼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외국사업자들의 별도 설비투자가 필요없는 회선재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시장진입을 확대할 것이다. 설비보유가 필수적인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경우는 2001년 이후에도 외국사업자의 단독진출은 불가능하지만 신규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무선 서비스 부문에는 외국사업자가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서비스 중 국제전화서비스의 경우 시장진입 유인이 존재

하는 편이며 시내전화부문도 대규모 이용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사업자들의 선택적인 시장진입이 일어날 수 있다. WTO 기본통신협상으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들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며, 재판매서비스 등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은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진출과정에서 선진 외국기업에 비해 기술력, 자금력, 마케팅 능력에서 떨어지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해 이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에 따라 외국통신사업자들의 국내진출과 국내 신규사업자들의 등장에 따른 경쟁확대로 국내 통신장비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대한 선진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단말장비를 포함한 국산장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WTO 체제에 대응한 규제정책의 방향

가. WTO 체제하의 규제정책 방향

'97년 2월에 타결된 WTO/GBT 협상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선 모든 규제의 방향이 경쟁제한적 관행에서 경쟁촉진적 제도로 전환되며, 규제제도 운영도 투명하게 전환될 것이다.

내외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도 준수해야 한다.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라는 사업자수 철폐와 음성재판매 허용, 동일인 지분제한, 국경간 공급허용 등을 양허하였다.

정보통신분야의 규제정책 방향은 크게 (1)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발전 (2) 정보기반의 고도화 (3) 이용자의 기본 권리 강화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단기적 정책방향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사업자의 단기간적인 보호정책,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제도의 투명성 확보이며, 중기적 정책방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신속한 대응,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 촉진,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 정책방향은 관리형 경쟁에서 실질적 경쟁이 되도록 요금규제 완화, 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증대와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해야 하며,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경쟁이 생산적이며 협력적인 경쟁이 되도록 기업가의 소모적 경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며,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보완하고, 연구개발 촉진, 전략적제휴 증

대, 망고도화 유도 등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선서비스의 경우 주파수 중심의 허가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규제제도의 개편 방안

주요 규제제도의 개편사항은 진입관련으로서 심사기준정리, R&D 출연금 최고액방식 일부 도입, 인수·합병의 완화 등이 있으며, 경쟁촉진 관련사항으로서는 통신위원회 강화, 요금규제 완화, 결업제도 완화, 설비제공 제도 정비, 자가통신설비의 목적 외 사용제도 정비 등이 있다.

또한 이용자보호 관련사항으로는 사업자 도산시 보증금에 대한 환불보장제도와 품질보장제도가 있으며, 부가통신역무의 개선사항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 육성차원의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전화세 제도 개선과 철도청 부지 사용제도 정비, 기지국 설치 관련 제도의 완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제3장 통신사업간 인수합병의 전망 및 정책방향

최근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내·외적인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왔고 WTO 체제의 등장으로 정보통신시장의 세계

화, 개방화,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대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서비스간 영역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Internet의 출현과 이를 통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창출이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서비스간 복합화와 무선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시장이 실험적으로 탄생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세계사업 확대에 따라 범세계 통신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통신사업자들은 범세계적 서비스 제공 기반구축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능력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힘입어, 각국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사업내역과 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들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분야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과 협력관계 구축이 새로운 사업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분야에서 신규서비스 사업권 확보와 정보통신산업으로서의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간헐적인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시도가 있어 왔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단밀기 등 관련제조

업이나 중소S/W기업들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입장에서 인수·합병이 사후적 사업조정수단의 하나로만 인식되어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환경이 그 동안의 정부주도의 신규사업자 지정국면에서 본격적인 기업중심의 자율적 경쟁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각종 규제가 시장현실을 선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8년부터 WTO 양해각서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기업 경영권 시장 개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사업자 정에 실패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적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부문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산업구조가 유도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종합적인 M&A 정책 수립 및 관련제도의 정비가 어느때 보다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 M&A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는 M&A의 순기능 촉진을 위하여 경영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M&A 촉진 전략으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투명성, 일관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정보통신부의 독자적 규제 정책을 유지하되 망중심의 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규제의 기본틀은 기존의 명시적 규정에 의한 허가시스템을 유지하되 인가대상을 점차 줄여 경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규제의 기준을 구체적 행위보다는 M&A를 통한 공정경쟁저해 등 구체적 효과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수직적 거래는 기본적으로 자율화하고 수평적 M&A 중 동종 서비스 사업자간 거래는 금지하되 공정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분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수합병의 경우를 준용하되, 기업재분할의 의도가 반공정 경쟁적이거나 단기 M&A 수익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셋째, 적대적 M&A와 차입인수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허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제4장 틈새형 서비스 및 미래형 서비스 관련 정책방향

1) 공전공접속을 통한 음성재판매 및 인터넷전화

가. 음성재판매

음성재판매란 음성단순재판매(voice simple resale), 즉, 공전공접속된 음성교환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망의 고도화 측면에서는 망을 보유한 사업자의 기여가 보다 크지만, 재판매의 허용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음성재판매의 사업자지위 분류는 타국에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매 고유의 취지를 살려서 정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 허가의 경우 최근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재판매사업자는 고수익 시외구간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 확실하므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시외전화수익의 손실폭은 의외로 클 수가 있어, 공전접속은 허용하되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손실폭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접속부가료의 책정이 필요하다.

나. 인터넷전화

Phone-to-Phone 방식의 인

터넷전화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전화 대 일반전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PSTN과 인터넷 망간의 갭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낮은 품질과 망혼잡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으며, PSTN 국제전화 요금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전화 요금은 용량, 품질 개선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해 상승할 전망이며, 향후 주요 경쟁력 요인은 요금 격차보다는 고도 부가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될 것으로 사료된다. 통신시장의 자유화로 망과 서비스의 결합이 가능해졌고, 인터넷전화는 컴퓨터산업과 통신산업의 결합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인터넷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별정통신사업자로서 허가되어 지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2) 국제콜백서비스 및 국제해자광케이블 임대사업 관련 정책

콜백서비스란 국가간의 요금격차를 재정거래의 기회로 이용하는 대체 서비스(Alternate Service)로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의 수입의 잠식과 국제전화시장의 경쟁촉진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쟁적 시장에서 원가지향적인 국제전화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콜백 사업국들은 국제전화 수입 증대 뿐만 아니라 외국발신통화

를 자국발신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국을 국제통화 트래픽의 중심지로 허브(hub)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콜백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콜백 대상국들은 주로 국제전화수입으로 수익성이 낮은 보편적 서비스 부문을 보전하고 통신 하부구조의 개발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로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수익감소가 통신 분야의 정부세입 감소로 직결되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적접적이고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콜백대상국의 통신망 및 설비를 무단 이용하게 되어 통신망 사업자의 운용비용이 증대하고 통신망의 품질이 저하된다 문제와 당면하고 있다.

콜백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ITU-T/WTSC에서 자국 내에서 콜백을 허용, 금지 또는 규제하는 것은 각국의 자유재량임을 천명하고 공중통신망과 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constant calling과 answer signalling suppression 방식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였다. 또 ITU는 콜백 관련 업무의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콜백 이용국에서는 정부가 콜백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침을 세워 공표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과 콜백제공국에서는 이용국의 정책을 자국내 사업자에게 알려 콜백이 금지된 국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채택하였다.

현재 콜백이 대부분 국가의 국제전화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저렴한 요율을 발판으로 200여개 국가에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등 그 영향력은 세계적인 규모이다.

한국은 현재까지는 콜백서비스를 불법화하였으나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국내사업자망의 이용을 전제로 한 국경간 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1998년부터 콜백서비스가 합법화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부는 이들 사업을 별정통신사업으로 추가하여 허가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국제통화요율을 원가에 근거하도록 조정하여 콜백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동시에 국내통신사업자들의 국제콜백사업 진출을 지원하여 거대 사업자들의 발신 트래픽 구심화 전략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적극적 구심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국가 사업자들과 연합하여 동북아 지역의 통화트래픽 구심화나 세계 거대 사업자들과의 연합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해저광케이블은 국제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서비스 중 '해저케이블'로 된 국제 전송 시설에 대한 임대서비스에 국한하여 규정한 것으로 유선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해저케이블은 국제통신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최근 국제전화서비스 외에 국제전용회선으로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광케이블의 개발로 건설비의 저렴화, 디지털화, 대용량화가 실현되어 경쟁적, 보완적 국제 전송시설인 위성에 비해 경제성이나 성능의 측면에서 국제전용회선사업자 및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국제 전송로로 주목받게 되었다.

국제통신의 수요 증가는 해저광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직결되어 있고, 현재 15개국 이상의 국제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있어 WTO 기본통신협상이 발효되는 1998년 이후에는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적 국제통신사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국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국제통신기간망인 해저케이블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국제음성통신서비스의 성장을 이 매년 11~12% 예상되는데 비하여 국제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비음성통신서비스의 성장률은 매년 9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음성 통신서비스시장은 인터넷 및 인트라넷과 다국적 기업의 기업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WTO 기본통신협상 이후 국

제단순재 판매시장이 전반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ISR의 근간이 되는 국제전용회선 서비스시장의 성장으로 직결되게 될 것이다.

한편 해저케이블망과 임대업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원조달, 거대통신사업자들의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시장 지배, 경쟁적 하부구조로서의 위성의 발전 등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이 부분의 성장,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되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통신과 테이콤이 양분하고 있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시장에 국제 및 국내부문에 각각 경쟁적 사업자가 지정됨에 따라 시장 패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국제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은 새로운 경쟁적 사업자가 허가되고, WTO 기본통신협상 후속조치로서 별정통신부문이 허용되게 됨에 따라 시장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997년초 중요 통신설비 설치제도를 승인원칙에서 신고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저케이블건설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해저케이블 임대사업은 재판매서비스, 인터넷, 기업내 통신, 데이터통신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이들 서비스의 발전과의 밀접한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전용회선서비스를 위한 해저케이블의 충분한 확보와 경쟁력 있는 요금책정을 통하여 국내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의 국제전용회선사업자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해저케이블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해저케이블 임대업시장의 성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용환수를 촉진시킬 수 있어 해저케이블 구축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고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정책 연안 및 개선방안

초고속정보통신에 대한 접근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이를 보장하는 정책들이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고도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인 학교, 의료기관, 도서관 등의 공공정보화 추진과 초고속국가망 접근 및 저렴한 요금의 사용들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의 고도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보장을 위해서는 망고도화 또는 망구축(초고속망 등)은 물론 고도화된 망에의 접근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접근환경의 조성은 Dial-up, LAN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나, 초고속 서비스 사용에 적합한 접근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LAN 구축에 의한 접근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육부는 2000년까지 초중고 학교에 약 3,100억원을 투자하여 LAN을 구축하는 학교전산망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학교의 고도화된 망에의 접근환경 조성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아울러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한편 초고속 서비스의 사용을 위한 기술지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제5장 경쟁체제하의 고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방안

1)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발전방향 : 고도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란 전국민이 저렴하고 규일한 요금에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해왔다. 기본적 통신서비스는 주로 음성전화에의 가입, 시내통화, 응급전화 등을 의미해 오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은 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전국적인 규일요금의 부과, 이용자별 규일요금의 부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보조 실시, 시내통화료와 기본료를 저렴하게 유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 서비스에의 접근환경 조성과 함께 충분한 기술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이를 위한 인력양성, 재원확보가 중요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제6장 통신망 진화와 장기 규제제도

최근 방송에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통신방송융합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 등 방송 선진국들이 방송의 디지털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 환경을 조기에 정비하여 사업 참여 희망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의 혁신과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 규제의 원칙, 탈규제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이나 세제 등의 산업 육성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로의 진입에 있어 예견되는 방송 산업구조 변화로는 기업 결합과 미디어 결

합이 예견되고 있다. 이전까지 매체간 수직적·수평적 통합 및 교차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정책기조에서 CATV, 위성 방송 사업이 점차로 확산되고 세계화에 대비한 방송 경쟁력 제고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골격이 수정되어 매체간 수직적·수평적 결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사업자 구도나 사업 주체에 관해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방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장기적으로 타당한 정책이 개발되어져서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기업 결합의 양태와 정도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미디어간 결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각국의 방송 관련법 체계를 외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미국, 일본처럼 무선과 유선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법 체계와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단일한 방송법에 의해 규율하는 체계로 크게 구분되며, 우리의 방송법 개정안은 후자에 속한다.

무선과 유선을 법 체계상 구분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Communications Act of 1934

가 규율하고 있지만 특별히 유선은 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 of 1984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지상파 TV 방송에 대해서 방송법이 존재하고,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유선텔레비전 방송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EU 차원에서의 단일 시장을 염두에 두고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 등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를 “audiovisual” 개념으로 통합, 법적 규제를 한다는 점을 큰 특색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규제 기관적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으로 미국의 FCC, 일본의 우정성을 들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신과 방송을 별도의 규제 기구에 의해 다루고 있으며, 영국의 OFTEL과 ITC, 통신에서는 연방정부가 규제 권한을 갖지만 방송은 기본적으로 주 정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한 독일의 체제, 그리고 문화커뮤니케이션성, CSA와 우정성으로 구분되는 프랑스 체계가 그것이다.

또한 영국의 통신법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모두 1996년에

최근의 동향

- 신기술, 신규서비스의 확산 →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 검토
- 통신산업 경쟁도입 →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표적지향성 강조)

전면 개정한 통신법 등 유럽의 국가들은 별도의 통신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96년 통신법에서 시작된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한 법의 대응은 영국의 방송법 개정,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통신법과 방송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놓았지만 아직 분명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정책과 비전이 먼저 설정되면 이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맞추어 나가는 노력과 체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가장 먼저 방송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이 갖고 있는 산업적 파급 효과와 지상파 매체의 공공적 성격을 동시에 견지하고자 하는 영국의 1996년 방송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구상에 발맞추어 우리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1995년 제정한 이래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기금 등을 이용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는 있다.

그러나 시급한 정보화 기반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통신을 다루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 탄생되었음에도 하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그후 여전히 정비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법 체계상의 혼란은 방치된 상태로 있다.

법 자체에 대한 개정 논의 못지 않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규제 기관의 통폐합 문제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FCC, 일본의 우정성 정도

를 빼고는 유럽의 경우 모두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규제 기관을 정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현상, 이를 담당하는 기구 등을 다루는 제도와 법이 모두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민간사업자들이고 이들의 신규 서비스 개발과 사업을 법이 막고 있다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고쳐 주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통신쪽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사업법, 전산망법처럼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이라는 망위주의 법과 방송쪽에서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등의 개별 서비스 중심의 법 등을 일차적으로 정보화촉진 기본법이라는 기반구조적 성격의 틀속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